

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 - 0003호

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, 제20조, 제24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, 제17조, 제19조 및 제26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전력량계 기술기준(형식승인기준, 검정기준 및 기준기 검사기준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0. 1. 11.

기술표준원장

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

1. 개정취지

전력량계 관련 국내 기술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과 차이가 없어,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과 형식승인 기준을 부합시키고, 전력량계 형식승인 시험 시간 단축을 통해 빠른 제품 개발 속도에 대응하여, 업계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전력량계 기술기준을 국가표준(KS C 1214)과 부합화시키고, 기억소자 시험 관련 규정을 개정함

3. 시행일

본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.